

12 | 음료베이스

□ 주요 부적합 내역

√ 보존료, 세균수, 대장균군

□ 기준 규격

- 정의 : 동·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, 먹는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.
- 원료 등의 구비요건
 - (1) 음료베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동·식물성 원료는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으로서 각각의 중금속기준이나 농약잔류허용기준, 첨가물 사용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- 규격(*표시 규격은 위해우려가 있거나 사고발생시 검사)
 - (1) 납(mg/kg) : 0.3 이하
 - (2) 카드뮴(mg/kg) : 0.1 이하
 - (3) 주석(mg/kg) : 150 이하(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제품에 한한다)
 - (4) 세균수 : $n=5, c=1, m=100, M=800$ (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.)
 - (5) 대장균군 : $n=4, c=1, m=0, M=10$
 - (6) 유산균수 : 표시량 이상(다만, 유산균 함유제품에 한한다)
 - (7) 보존료(g/kg) :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	0.6 이하(안식향산으로서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.3g/kg 이하이어야 하며,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.1g/kg 이하이어야 한다. 또한 분말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)
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	0.1 이하(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, 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.6g/kg 이하이어야 하며,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.1g/kg 이하이어야 한다.

* (8) 식중독균

- 식육(제조,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),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,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서는 특성에 따라 살모넬라(*Salmonella* spp.), 푸모니신 (Fumonisin), 장염비브리오(*Vibrio parahaemolyticus*),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(*Listeria monocytogenes*), 노로바이러스 (Norovirus), 장출혈성 대장균(*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*), 캄필로박터 제주니/콜리(*Campylobacter jejuni/coli*), 예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(*Yersinia enterocolitica*) 등 식중독균이 $n=5$, $c=0$, $m=0/25g$ 이 어야 하며, 또한 식육 및 식육제품에 있어서는 결핵균, 탄저균, 브루셀라균이 음성이어야 한다.

다만, '제4. 식품별 기준 및 규격'에서 식중독균에 대한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에는 해당 식품의 규격을 적용하며, 그 외의 가공식품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(*Bacillus cereus*),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(*Clostridium perfringens*), 황색포도상구균(*Staphylococcus aureus*)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가) 바실러스 세레우스 : g 당 1,000 이하(멸균제품은 음성) 나)

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: $n=5$, $c=0$, $m=0/25g$

다) 황색포도상구균 : $n=5$, $c=0$, $m=0/25g$

* (9) 멜라민(Melamine) : 2.0 mg/kg 이하

* (10) 방사능 : $^{134}\text{Cs} + ^{137}\text{Cs}$ 100 Bq/kg이하, ^{131}I 300 Bq/kg이하

* (11) 식품조사처리기준 : 조사처리할 수 없다.

□ 2017년 중점검사항목

검사항목	기준
납(mg/kg)	0.3 이하
카드뮴(mg/kg)	0.2 이하
세균수	1 mL당 100 이하(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. 다만, 분말제품은 1 g당 3,000 이하)
대장균군	음성
유산균수	표시량 이상(다만, 유산균 함유제품에 한함)
보존료(g/kg)	- 0.6 이하(안식향산으로서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.6g/kg 이하이어야 하며,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.1g/kg 이하이어야 한다. 또한 분말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) - 0.1 이하(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, 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.6g/kg 이하이어야 하며,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

검사항목	기준
	량은 0.1g/kg 이하이어야 한다. 또한 분말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)
사이클라메이트	불검출

□ 첨가물 사용기준

○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첨가물

품목명	사용기준	주용도
글루콘산망간	탄산음료류, 기타음료	영양강화제
글루콘산아연	음료류	영양강화제
사카린나트륨	음료류(발효음료류, 인삼·홍삼음료 제외) : 0.2g/kg 이하(다만, 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.0g/kg 이하)	감미료
수소	음료류	충전제 제조용제
수크랄로스	음료류, 가공유류, 발효유류, 조제커피 : 0.40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	감미료
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 알루미늄레이크	식용색소녹색제3호로서 과·채음료, 탄산음료, 기타음료 : 0.1g/kg 이하 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	착색료
식용색소적색제102호	음료베이스 : 0.05g/kg 이하(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체음료)	착색료
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알루미늄레이크	식용색소적색제2호로서 음료베이스 : 0.3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	착색료
식용색소적색제3호	과·채음료, 탄산음료, 기타음료 : 0.3g/kg 이하 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	착색료
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	식용색소적색제40호로서 과·채음료, 탄산음료류, 기타음료 : 0.3g/kg 이하 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	착색료
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알루미늄레이크	과·채음료, 탄산음료류, 기타음료 : 0.1g/kg 이하 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	착색료
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 알루미늄레이크	과·채음료, 기타음료 : 0.1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	착색료
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알루미늄레이크	과·채음료, 탄산음료, 기타음료 : 0.08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	착색료
식용색소황색제5호	과·채음료, 탄산음료, 기타음료 : 0.1g/kg 이하	착색료

품목명	사용기준	주용도
식용색소황색제5호 알루미늄레이크	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	
아세실팜칼륨	음료류, 가공유류, 발효유류, 조제커피 : 0.50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	감미료
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	안식향산으로서 기타음료(분말제품 제외), 인삼·홍삼음료 : 0.6g/kg 이하(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.6g/kg 이하이어야 하며,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.1g/kg 이하)	보존료
에스테르검	탄산음료, 기타음료 : 제한없음	겔화제 안정제
이.디.티.에이.이나트륨	무수이.디.티.에이.이나트륨으로서 음료류(캔 또는 병제품):0.035g/kg 이하(이.디.티.에이.칼슘이나트륨과 병용할 때에는 무수이.디.티.에이.이나트륨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.035g/kg 이하)	산화방지제
이.디.티.에이.칼슘이나트륨	무수이.디.티.에이.이나트륨으로서 음료류(캔 또는 병제품):0.035g/kg 이하(이.디.티.에이.이나트륨과 병용할 때에는 무수 이.디.티.에이.이나트륨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.035g/kg 이하)	산화방지제
이산화규소	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, 거품제거제 및 여과보 조제 목적으로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. 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기타식품 : 2% 이하	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거품제거제
카페인	카페인 은 탄산음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카페인의 사용량은 탄산음료의 0.015% 이하(다만, 최종적으로 탄산음료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음료베이스는 0.075% 이하)이어야 한다.	향미증진제
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	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기타음료(분말제품 제외), 인삼·홍삼음료 : 0.1g/kg 이하(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.6g/kg 이하이어야 하며,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.1g/kg 이하)	산화방지제

○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(공전에 명칭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)

품목명	사용기준	주용도
스모크향	스모크향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스모크향은 음료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	향료

□ 표시기준

○ 표시대상항목

- (1) 제품명
- (2) 식품유형
- (3) 업소명 및 소재지
- (4) 유통기한(멸균한 액상제품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)
- (5)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(단,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)
- (6) 원재료명
- (7) 영양성분 및 1회 섭취참고량
 - 음료베이스(180 ml)
 - * 1회 섭취참고량은 영양성분 표시에 활용하는 것이며, 의무 표시사항이 아님
- (8) 용기·포장 재질
- (9) 품목보고번호 - 수입제품 제외
- (10) 성분명 및 함량(해당 경우에 한함)
- (11) 보관방법(해당 경우에 한함)
- (12) 주의사항
 - (가) 부정·불량식품신고표시
 - (나) 알레르기 유발물질(해당 경우에 한함)
 - (다) 구토 설사 등 기타 유해 물질 (해당 경우에 한함)
- (13) 알레르기 유발물질(해당 경우에 한함)
- (14) 방사선조사(해당 경우에 한함)
- (15) 유전자변형식품(해당 경우에 한함)
- (16) 기타표시사항
 - (가) 공통사항

먹는물과 유사한 성상(무색 등)의 음료는 제품명으로 “○○수”, “○○물”, “○○워터” 등 먹는물로 오인·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탄산수 및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(사) 기타음료

분말형태의 음료베이스는 분말제품임을 표시하고, “천연”, “신선”, “자 연” 또는 “농축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100% 천연향을 사용한 경우 “천연○○향 첨가”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.
- (17) 표시사항의 적용특례
 - 제조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하고자 하는 음료류(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 균음료는 제외한다)로서 병마개에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경우, 제조

<수입식품의 표시기준 주의 항목>

*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에서 수입식품 관련 사항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국내 제조 식품과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시기준은 반드시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한글표시사항과 수출국 표시 일치

- 유통기한 :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
(유통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: Expiration date, Sell by date, EXP, E)
- 품질유지기한 :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(품질유지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: Best before date, Date of Minimum Durability, Best before, BBE, BE)
 - ※ 유통기한, 품질유지기한, 제조일자 등 일자 표시에 대해서는 변경 불가
- 원래의 용기·포장에 표시된 제품명, 유통기한 등 일자 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됨

○ 표시방법

-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 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한자나 외국 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입되는 식품등과「상표법」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 할 수 있다.
-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제조·가공업소에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(로고, 기호, 문자, 도형 등)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(OEM,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) 식품 및 식품첨가물(유통 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한다)은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주표시면에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(다만, 농·임·수산물, 주류는 제외한다). “원산지: ○○(위탁생산제품)”, “○○ 산 (위탁생산제품)”, “원산지:○○(위탁생산)”, “○○ 산(위탁생산)”, “원산지:○○(OEM)” 또는 “○○ 산(OEM)”
-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,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

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, 원래의 용기·포장에 표시된 제 품명,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 려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한글로 표시된 용기·포장으로 포장하여 수 입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해당 제품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.
- 자사의 제품을 제조·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 명,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·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만을 표시 할 수 있고, 그 식품등에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 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
-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 는 식품등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같은 법 시행령 제26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은 제 외한다.

○ 업소명 및 소재지

-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: 영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 재지(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, 이 경우 '반품교환업 무 소재지'임을 표시하여야 한다)를 표시하되, 해당 수입식품의 제 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명을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예시) 수입판매업소 : 업소명, 소재지(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)

제조업소 : 업소명

○ 제조연월일

- 제조일은 “○○년○○월○○일”, “○○.○○.○○”, “○○○○년○○

월○○일” 또는 “○○○○.○○.○○”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의 “연월일”의 표시순서가 이와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“연월일”의 표시 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.

○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

- 유통기한은 “○○년○○월○○일까지”, “○○.○○.○○까지”, “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까지”, “○○○○.○○.○○까지” 또는 “유통기한 : 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”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품질유지기한은 “○○년○○월○○일”, “○○.○○.○○”, “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” 또는 “○○○○.○○.○○”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간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“연월일”의 표시순서가 이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“연월일”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, “연월”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“연월일” 중 “일”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“월”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. 또한 연월일은 YYMMDD로 일괄 통일한다
-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의무가 아닌 국가로부터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자는 제조국, 제조회사로부터 받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글표시사항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자연상태의 농·임·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·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된다.